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52호
2025. 3. 19.(수)



목 차

◆ 공 고

제2025-953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2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953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km ²)	비 고
합 계		110.6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논현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세곡동, 수서동, 신사동, 압구정동, 역삼동, 을현동, 일원동, 자곡동, 청담동	32.14
	서초구	내곡동, 반포동, 방배동, 서초동, 신원동, 양재동, 염곡동, 우면동, 원지동, 잠원동	25.46
	송파구	가락동, 거여동, 마천동, 문정동, 방이동, 삼전동, 석촌동, 송파동, 신천동, 오금동, 잠실동, 장지동, 풍납동	32.52
	용산구	갈월동, 남영동, 도원동, 동빙고동, 동자동, 문배동, 보광동, 산천동, 서계동, 서빙고동, 신계동, 신창동, 용문동, 용산동1가, 용산동2가, 용산동3가, 용산동4가, 용산동5가, 용산동6가, 원효로1가, 원효로2가, 원효로3가, 원효로4가, 이촌동, 이태원동, 주성동, 청암동, 청파동1가, 청파동2가, 청파동3가, 한강로1가, 한강로2가, 한강로3가, 한남동, 효창동, 후암동	20.53
			아파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가목인 경우로 한정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5년 3월 24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허가대상 용도 : 아파트

※ 허가대상 여부는 허가신청 당시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함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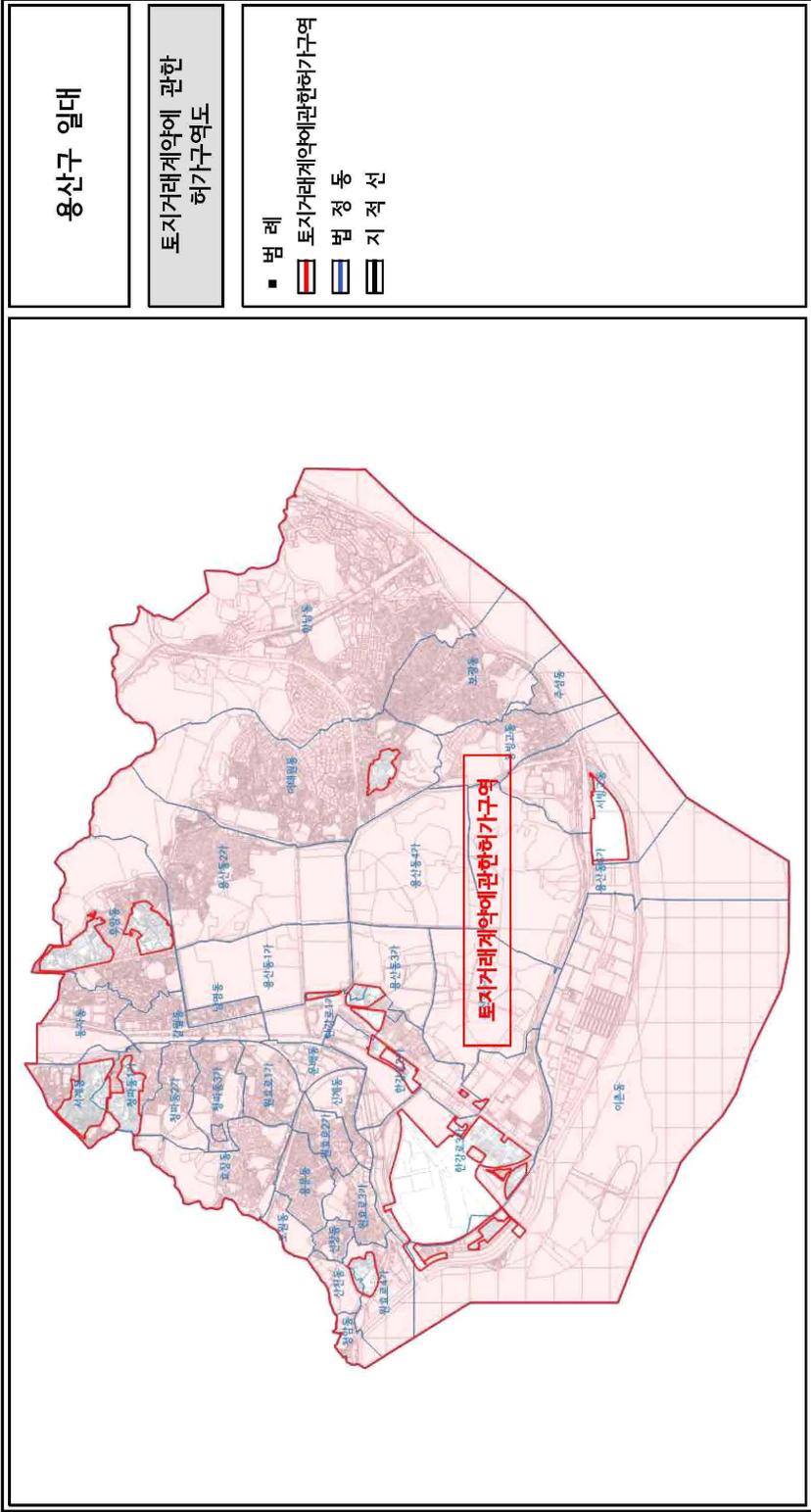
용도지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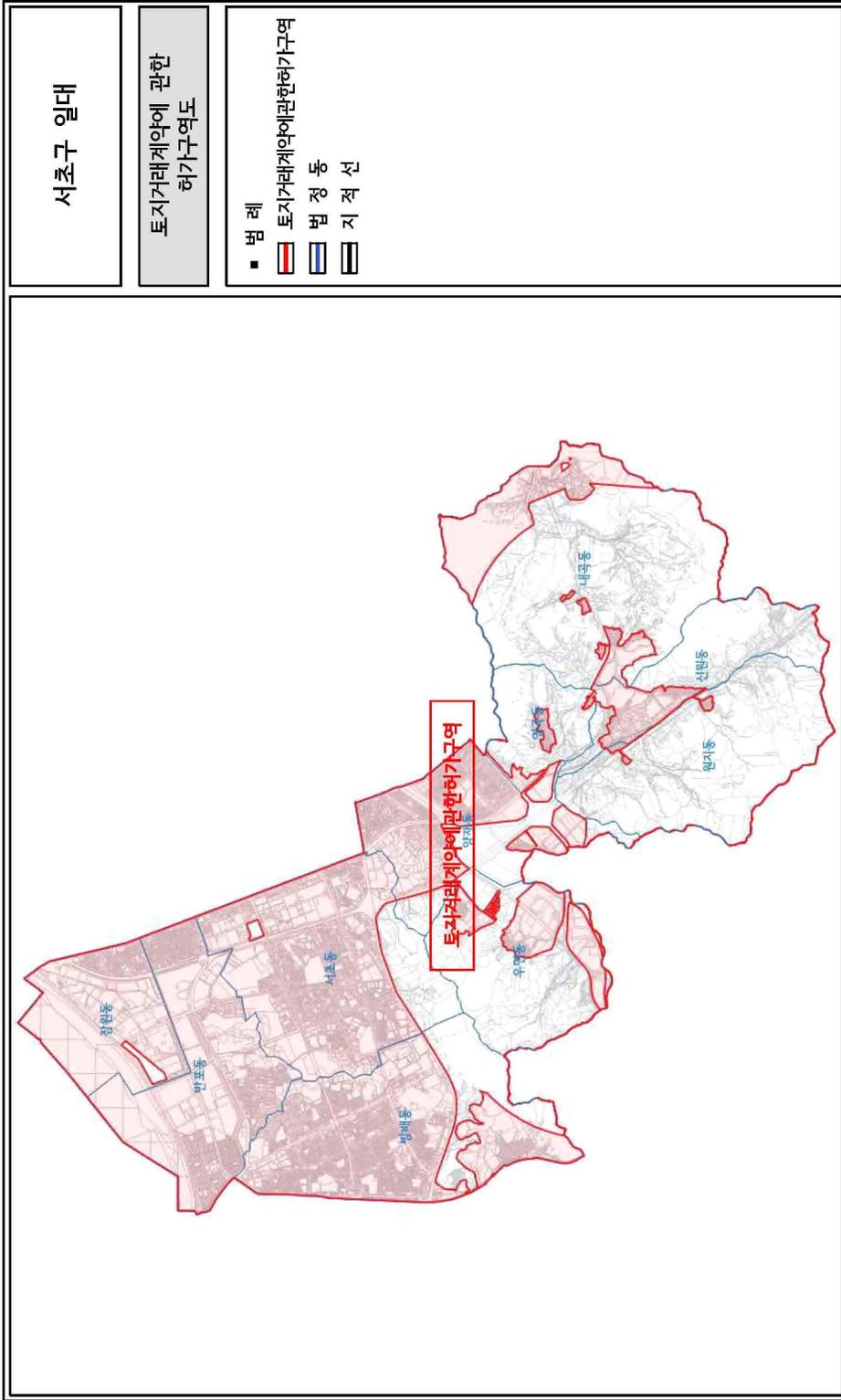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붙임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1. 용산구 일대



2. 서초구 일대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